

<p>물 및 신축건축물에 적용함으로써 과밀화 방지 및 화재등의 재해 취약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</p> <p>○ 지구안의 건축물 특례제한건축물 및 신축건축물의 높이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이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은 0.5미터이상, 높이 4미터를 초과하고 8미터이하인 부분은 1미터이상을 띄우도록 하였음.</p> <p>글으로, 검토 의견을 종합결과</p> <p>○ 현행조례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시 건축법 등 특례를 세대당 전용면적 60㎡이하는 적용하고, 60㎡초과시는 배제함으로써 소규모 건물만 건립하므로 과밀화 초래, 주거환경악화 및 재해취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므로</p> <p>○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세대당 전용면적 60㎡이하인 건축물도 건축법 등의 특례를 제한함으로써 건축물의 높이 등의 제한을 강화하고, 특례제한건축물도 건축법 등의 특례를 일부 적용하여 건축높이 등을 완화하여 중·소건축물 전립으로 과밀세대의 증가를 막고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나</p> <p>○ 금번 조례개정안은 세대수가 증가하는 건축물도 신규건축물로 정의하여 건축법 등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건축물의 높이제한(도로의 사선제한, 일조권, 공동주택의 채광방향)으로 3층이상 건축이 곤란한 높이제한과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확보에 따른 비용부담 때문에</p> <p>○ 자비로 주택을 개량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이 부진할 것으로 염려되므로</p> <p>○ 현재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입장과 조례 개정시 대상지역의 영세한 저소득주민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부담 등 양면성에 대한 세심한 비교형량이 요구된다 고 사료됨.</p> <p>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</p> <p>5. 토론요지 : 없음.</p> <p>6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: (소위원장 박정철의원)</p>	<p>가. 수정이유</p> <p>서울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에 있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확보기준이 사업주체인 주민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이를 일부 완화하고,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 시행효력시한을 연장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고자 함.</p> <p>나. 수정주요골자</p> <p>○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안의 연면적 300㎡미만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나, 특례제한건축물 및 신축건축물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정하는 2분의 1이상으로 함.(제25조)</p> <p>○ 조례의 시행효력시한이 「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」의 개정에 따라 현행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.(조례 제2617호 부칙 제1항)</p> <p>○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유예기간을 두어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, 건축선의 지정·건폐율·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추가함.(안 부칙 제1항)</p> <p>7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(만장일치)</p> <p>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</p> <p>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</p> <p>.....</p> <p>서울특별시길음택지조성비분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auto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488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1999. 12. 28 도시관리위원회</td> </tr> </table> <p>1. 심사경과</p> <p>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9년 12월 1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</p> <p>나. 회부일자 : 1999년 12월 2일 회부</p> <p>다. 상정일자 : 제1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-제4차 도시관리위원회(1999년 12월 22일) 상정·의결</p> <p>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주택국장 양</p>	의안 번호	488	1999. 12. 28 도시관리위원회
의안 번호	488	1999. 12. 28 도시관리위원회		

<p>갑)</p> <p>가. 폐지이유 길음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택지조성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지구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분담금을 부과·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는 그 존치실익이 상실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.</p> <p>나. 주요골자 : 조례폐지</p> <p>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양재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61.12.5 제정된 본 조례의 설치목적은 「길음택지조성에 요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지구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분담금을 부과징수한다」로 규정하고 있음. ○ 그러나 길음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본 조례는 존치실익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함에 타당하고 사료됨. <p>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</p> <p>5. 토론요지 : 없음.</p> <p>6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: 없음.</p> <p>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.</p> <p>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</p> <p>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</p>	<p>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조제1호중 "주민이"를 "주거환경개선계획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주민이"로 하고, 동조제5호중 "멸실된 후 제4호의 특례제한건축물 규모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"를 "멸실된 후 세대수를 증가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"로 하며,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6. "환지방식사업"이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주거환경개선계획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.</p> <p>제4조를 삭제한다.</p> <p>제8조제1항중 "현지개량사업 대상 건축물은 법 공포일"을 "현지개량사업 및 환지방식사업 대상 건축물은 법 공포일(1989.4.1)"로 하고, 동조제3항중 "대상 건축물의 개량범위와 방법은"을 "대상 건축물의 개량범위는 그 대지가 20제곱미터 이상(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잔여토지를 포함한다)인 경우에 한하며, 개량방법은"으로 한다.</p> <p>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제8조의2(환지방식사업) 환지방식사업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존도로 폭 2미터이상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50퍼센트이하인 지구 2. 대지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가 대상지구 전체 필지수의 2분의 1이상인 지구 3. 도로 형상이 부정형이나 세장형(대지 폭 3미터미만을 말한다)으로 건축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경우가 대상지구 전체 필지수의 2분의 1이상인 지구 <p>제10조제1항중 "현지개량사업과 공동주택건설사업이"를 "현지개량사업 또는 환지방식사업이 공동주택건설사업과"으로 한다.</p> <p>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11조(거실의 채광 등) 지구안의 건축물의 거실 등에는 건축법시행령 제5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기준의 각 2분의 1이상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특례제한건축물 및 신축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<p>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</p>	<p>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</p>
<p>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</p> <p>제25조 단서중 "바에 따른다."를 "설치대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."로 한다.</p> <p>조례 제2617호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 부칙 제1항 중 "1999년 12월 31일"을 "2004년 12월 31일"로 한다.</p> <p>안 부칙제1항 단서중 "제2조·제8조·제8조의 2·제10조·제11조·제14조제2항·제19조·제21조·제21조의2 및 제32조"를 제2조·제8조·제8조의2·제10조·제11조·제14조제2항·제17조·제18조·제19조·제21조·제21조의2·제25조 및 제32조"로 하고, "3월"을 "6월"로 한다.</p>	<p>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</p>